

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·운영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0일
------	------	-------------

신고인	시설명	
	성명(대표자)	
	주소(사무실)	(전화번호:)
시설 주소		(전화번호:)
시설 종류	[] 바닥분수, [] 일반분수, [] 벽면분수(폭포 등), [] 실개천형, [] 기타	
운영 주체	[] 국가, [] 지방자치단체, [] 공공기관 [] 민간 (시설구분: []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, [] 관광지·관광단지, [] 도시공원, [] 체육시설, [] 어린이놀이시설, [] 공동주택, [] 대규모점포)	
시설 설치완료(예정)일		최초 가동개시(예정)일
연중 운영기간	개월(월 ~ 월)	바닥면적 m ²
용수 종류	[] 수돗물(%), [] 지하수(%), [] 하천수, 계곡수(%), [] 기타() * 기타는 종류 명시,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	
저류조 용량	m ³	저류조 청소주기
여과기 설치여부	[] 설치(종류: 처리능력: m ³ /일), [] 미설치	
소독 방법	1. [] 염소(), [] 오존, [] 기타() 2. [] 소독기 설치, [] 미설치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·운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.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.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작성요령		

신고인란 중 성명(대표자)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.

처 리 절 차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